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10월 31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수출입과 조영태 과장, 엄혜선 사무관(02-2110-5332)		

내년부터 수입산 열연강판·후판 등에 원산지 표시해야

-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에 철강 판재류 추가 -

□ 내년 1월1일부터는 열연강판과 후판 등 철강 판재류를 수입하여 판매시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

○ 금일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수입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에 열연강판과 후판, 아연도금강판, 스테인리스강판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'대외무역관리규정(지경부 고시)' 개정안*을 고시하였음

*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 7208, 7210(전기, 용융, 착색 아연 도금강판에 한함), 7219 추가
 - 철강 중 H형강 등 형강류(HS7216)는 이미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지정되었음

□ 이는 일부 저가 수입산 철강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어 품질 불량으로 인한 구매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,

○ 향후 원산지 표시대상인 철강 판재류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, 국산으로 거짓표시를 하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,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및 최대 3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함

<원산지 둔갑판매로 인한 피해사례>
* 사례1)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국산 A사 자제로 제품 제작후 불량 발생, A사에 클레임 요청과정에서 유통업체가 수입산 공급사실을 밝히고, 클레임 비용 변상

* 사례2) 건물지붕용으로 유통업체서 구입한 국산 B사 철판 2장 중 한 장에 녹 발생, B사에 불량에 대한 보상신청결과 녹이 발생한 한 장은 수입산으로 판명

□ 원산지 표시 방법은 철강 판재류의 경우 스티커 부착, 불멸잉크 표시 등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함

○ 또한 절단, 도색 등 단순가공으로 인해 원산지 표시가 소실되었을 경우 단순가공업자에게 재표시 의무가 있으므로, 롤 상태의 열연강판을 절단한 경우 절단된 강판에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

□ 금번 일부 철강품목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해당제품의 원산지 둔갑판매행위 방지 및 특히 구매량이 작아 주로 유통상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·영세기업의 둔갑제품 구매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

<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지정의 효과(H형강 사례)>
* 금년 4월 H형강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및 과징금·과태료 부과조치 이후 수입량은 큰 변화없으나, 원산지 둔갑판매 사례는 크게 감소

□ 향후 지식경제부는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

○ 기업형 원산지 위반자 또는 원산지 상습 위반자 등에 대해서는 위반 물품명과 위반자,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며,

○ 원산지 위반물품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원산지 위반행위(훼손, 거짓표시 등)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중단 등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, 일반 국민이 원산지 위반물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임